

# 事業執行規程

2004年 12月20日 第2回 定期總會 制定

**第 1 條 (目的)** 本 規程은 本 學會 委員會의 事業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을 規定함으로써 合理的인 事業進行을 寄與하는데 目的이 있다.

**第 2 條 (事業計劃書)** 委員會에서는 事業執行에 關한 所定樣式의 事業計劃書を 理事會에 提出하여야 한다.

**第 3 條 (事業의 確定)** 理事會에서는 事業 開始 前에 事業計劃書を 審議, 議決하여 事業을 確定한다.

**第 4 條 (豫算執行)** 確定된 事業에 對해 委員會에서 所定樣式의 事業費 申請書を 提出하면 本會에서는 經理理事 決裁後 事業費를 支給한다.

**第 5 條 (事業完了 報告書)** 事業責任者는 事業完了 報告書 또는 成果物을 理事會에 提出하고 理事會에서는 이를 檢討하여 修訂 및 補完을 要求할 수 있다.

## 附 則

1. 本 規程은 2004年 12月 20日부터 施行한다.